[별지 제9호서식] (규칙 제18조, 제21조 관련) <개정 2026. 10. 23.>

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
이 의 신청인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성별)		()
	여권·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작성)		사업자(법인·단체)등록번호		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
	전자우편주소		팩스번호		
공개 또는 비공개 내 용					
이의신청 사유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(공개[] 부분 공개[] 비공개[])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. ※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[]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,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.				
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					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「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」 제18조에 따라 귀 기관의 정보공개(비공개)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의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정보공개심의회 심의	→	결 재	→	결과 통보

신청인 처 리 기 관 : 각 접수 위원회 또는 소속기관(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)

주) 소속기관의 경우 "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"을 "소속기관의 장"으로 고쳐 사용한다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80g/㎡]